
2025-1학기 비전임교원 2차 채용공고

1

채용직종·분야·인원

- 채용직종·분야·인원: 「강사, 초빙교원 채용분야 및 인원」 참조 (2쪽)

- 채용직종 및 분야 선택 시 유의사항
 - 직종(강사, 초빙교원) 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하나의 직종을 선택하여야 함
 - 임용소속이 다른 2개 이상 채용분야에 각각 합격한 경우 중복임용은 불가하며 하나의 소속을 선택하여야 함
 - 강사의 경우 “연구년, 보직, 휴직 대체”가 표시된 채용분야는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, 기재된 대체기간이 도래하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면직됨
 - 외부기관과의 협약(과제) 관련 초빙교원 채용분야 관련
 - 신규채용 지원자는 외부협약(과제)에 최종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임용되며, 외부협약(과제)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채용보류 내지 임용이 취소됨
 - 급여는 재원 부담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책정되고 관련 운영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
 -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등 사정변경 시 임용종료일 전에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 - 본교에 재직 중인 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은 현 직종·소속에 대한 2025.2.28.자 의원면직 조건부로 2025.3.1.자 신규임용이 가능함
 - 위 경우는 현 직종·소속에 대한 임용기간이 남아 있음(임용종료일이 2025.3.1. 이후)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에 지원하여 2025.3.1.자 신규임용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,
 - 현 직종·소속의 임용기간이 2025.2.28.자로 만료되어 당연면직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
 - 타 대학 전임교원은 본교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임용 불가함
 - 채용공고의 “담당 가능 과목”은 예시이므로 실제 담당할 교과목은 강의개설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한계시간 이내에서 추가로 강의를 배정하거나 강의배정이 없는 학기가 있을 수 있음(임용기간까지 신분은 유지되나, 강의배정이 없는 학기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)

강사 채용분야 및 인원

임용소속	채용분야명	채용인원	담당 가능 과목(예시)						추가 임용자격조건 등	연구년, 보직, 휴직 대체	문의처
			2025-1학기			2025-2학기					
			구분	교과목명	학점	구분	교과목명	학점			
보건바이오대학 산림자원학과	산림경영	1	전공	산림경영학및실습	3				- 휴직 교수 대체 (대체기간:2025.03.01. ~2025.08.31.) 6개월	850-6730	
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	교과교육학	1	전공 전공	일반사회교재연구 및 지도법(A)	3				- 연구년 교수 대체 (대체기간:2025.03.01. ~2025.08.31.) 6개월	850-4140	
				일반사회교재연구 및 지도법(B)	3						

초빙교원 채용분야 및 인원

임용소속	채용분야명	채용인원	활용목적 및 담당업무	직급명	급여조건 등	임용기간	추가 임용자격조건 등	문의처
차세대 반도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	초빙교원 (객원교수)	1	- 강의: 뉴로모픽의 이해 등	객원교수	강의 시 강의료 지급 (국고)	2025.03.01.~ 2026.02.28. (1년)	- 타 대학 전임교원 재직자	850-6704
글로벌경영대학 국제학부	한국어교육/ 한국어통번역	3	- 강의: 한국어읽기쓰기실제(2개 반), 한국어 말하기듣기실제(2개 반), 한국인의생활문화	초빙교수	강의 시 강의료 지급 (교비)	2025.03.01.~ 2026.02.28. (1년)		850-6010

※ 월 급여는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며,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음

※ 월 급여가 미기재된 채용분야는 정기지급 급여가 없으며 강의 시 강의료를 지급함 (강의료 지급기준은 채용분야별로 상이함)

※ 급여재원이 국고인 채용분야는 외부기관과의 협약 등에 따라 급여수준, 임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외부협약(과제)이 조기 종료되는 등 사전변경 시 임용종료일 전이라도 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
직 종	지 원 자 격
강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강의 경력자 2. 박사학위과정 1년 이상 수료자 3. 예·체능계열 및 기타 실기분야는 석사학위 소지자 가능 4. 특정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가능 (변호사, 회계사 등)
초빙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 (특수한 교과목: 기술발전에 따라 학생 수강 수요가 있음에도 해당 과목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제한적인 교과목) 2.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특정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자 나.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자 다.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라.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상당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마.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훌륭하게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
공통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. <u>1960. 3. 1. 이후 출생자</u> (강사, 겸임교원에 해당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사(겸임교원)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달한 때 당연면직된다. (대구대학교 강사임용규정 제23조, 겸임교원등임용규정 제21조) 3. 채용분야별 추가 임용자격조건 충족

3

지원서 접수

□ 접수방법: 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

☞ 접수처: (우 38453)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성산홀 13층 교무인사팀

※ 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는 2025. 2. 17.(월) 14:00까지 접수분에 한함

□ 접수기간: 2025. 2. 12.(수) ~ 2025. 2. 17.(월) 14:00까지 접수분에 한함

※ 기간 내 접수하지 않은 지원서는 접수되지 않음

□ 제출서류

구 분	제 출 서 류
공통사항	1. 신규채용 지원서 - 첨부 양식 작성 2. 연구실적목록 - 첨부 양식 작성 - 연구실적목록에 대한 증빙서류는 미제출 3. 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- 출력 후 지원서와 함께 제출 - 학·석·박 졸업(예정)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외국박사학위신고증, 전공 관련 자격·면허증,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 - 재직증명서는 발급일자 2025.1.1.자 이후 건만 인정함

4

심사절차

단계	심사구분	배점 등	심 사 내 용 등
1단계	지원자격	P(pass)/ F(fail)	-채용공고에 제시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심사 -지원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2단계 심사 실시
2단계	기초	일치/ 불일치	-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일치도 심사 -심사위원 과반의 일치를 받아야 심사 통과함
	전공	0 ~ 100점	-강의실적(실무경험실적) 및 잠재역량, 학문적 우수성 등 심사 -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받아야 심사 통과함
	면접	0 ~ 100점	-교육자적 자질 및 열정, 관련 지식수준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심사 -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받아야 심사 통과함

- 면접심사는 화상면접으로 실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공개강의를 실시할 수 있음 (면접심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일정은 해당 학과, 부서에서 개별 연락 예정)
- 본교 강의경력자에게는 강의경력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함
- 2단계 심사 통과자 중 상위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예정자를 선발하며, 상위 순위자의 임용 포기, 임용 결격사유 발생, 연락두절 등 임용불가 사유 발생 시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임용예정자를 정함 (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)
- 심사절차 관련 세부사항은 「대구대학교 강사신규채용지침」 및 「대구대학교 겸임교원등신규채용지침」 참조

5 임용기간 및 재임용 관련 사항

직 종	임 용 기 간	재임용 관련 사항
강 사	임용일로부터 1년 (2025.3.1. ~ 2026.2.28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·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 - 3년 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에 따름
초빙교원	“초빙교원 채용분야 및 인원”에 기재된 임용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임용 절차 없음 - 임용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에 따름

- 강사의 경우 “연구년(또는 보직, 휴직) 대체”가 표시된 채용분야는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, 기재된 대체기간이 도래하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면직됨
-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한국연구재단 등 타 기관과의 협약(사업, 연구과제수행 등)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채용분야별 임용기간을 반드시 확인

6 책무

직 종	책 무	강 의 시 간
강 사	학부 및 대학원에서 담당 교과목 강의를 담당	학기당 주당 6시간 이내
초빙교원	“초빙교원 채용분야 및 인원”에 기재된 활용목적 및 담당업무	학기당 주당 6시간(또는 9시간) 이내

- 실험·실습/실기과목(예체능 과목 제외)의 강의시간은 100분의 수업을 1시간으로 인정함
- 간호학과 임상실습 교과목은 3시간 실습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함
- 계절제 대학원의 강의 담당시간은 학기별 한계시간(강사 6시간 등)에 포함됨
- 초빙교원은 활용목적에 따라 강의를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

- 채용공고의 “담당 가능 과목”은 예시이므로 실제 담당할 교과목은 강의개설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한계시간 이내에서 추가로 강의를 배정하거나 강의 배정이 없는 학기가 있을 수 있음(임용기간까지 신분은 유지되나, 강의배정이 없는 학기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)

7 보수

직 종	내 용
강 사	- 본교 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름 - 임용계약과 별도로 학기별 강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함 -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
초빙교원	- 대학이 책정한 기준에 따라 월 급여 또는 강의료를 지급함 - 급여재원이 국고인 경우 외부기관 협약 등에 따라 책정됨

8 채용일정

기 간	내 용
2025. 2. 12.(수) ~ 17.(월) 14:00	지원서 방문 및 우편 접수 (증빙서류 출력)
2025. 2. 18.(화) ~ 19.(수)	채용심사 (지원자격/기초·전공·면접)
(예정) 2025. 2. 24.(월)	임용예정자 발표 (홈페이지)
미 정	신규임용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인사발령

- 채용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접수처로 연락하여 변경 요청하여야 함
- 면접심사는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채용분야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하며, 일정은 학과, 부서에서 개별 연락

9

지원 유의사항

- 지원서 입력 전 반드시 '접수유의사항'을 확인할 것
- 지원서 접수 시 기재사항의 착오, 누락, 오기, 판독 불가 등과 잘못된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- 심사과정에서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가 고려될 수 있음
- 타 대학 강사로 임용될 예정이거나 임용된 사람도 본교 공개채용에 지원 가능함
- 타 대학 전임교원이 지원하여 초빙교원(객원교수) 임용예정자로 결정될 경우, 본직 대학의 재직증명서 제출하여야 함
- 한국연구재단 등 타 기관과의 협약 관련으로 임용될 초빙교원은 관련 사업, 연구과제가 조기종료되는 등 사정변경 시 임용종료일 전이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- 안보학 분야의 지원자는 최종 국방부 적격심사를 통과하여야 임용 가능함
-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거짓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서류의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불응할 경우 임용결정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교원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됨
- 합격자는 우리대학교 채용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개별 연락하지 않음
- 적격자가 없는 채용분야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우리대학교 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 인사 관련 규정에 준함
- 채용서류 반환 관련 안내

「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10

문의처

- 채용절차 및 시스템 등 문의: 교무인사팀(053-850-5117)
- 담당 교과목 설명, 면접심사 일정 문의, 임용포기 접수 등: 채용분야별 문의처 참고

2025. 2.

대 구 대 학 교

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전화:(053)850-5117 FAX:(053)850-5120

교육목적: 만민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

교육목표: 유능한 전문직업인 배출 /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/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